2008. 6. 20(금) 10:00
제148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심 사 보 고 서

거 창 군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3.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1

《의안번호 제2008 - 18호》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경제과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6월 1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년 6월 19일

마. 의안번호 : 제2008 - 18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과장 이 동 순)

가. 개정이유

○ 현실에 맞지 않는 세출 규정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약칭을 삭제하여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주차장법」
-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 세출 범위를 확대 함(안 제4조제4항)

-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 운영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중 이 회계에 세입 된 금액의 범위 내에 한함.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함 (안 제3조제7호)

-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제3항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과태료의 부과・징수)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함(안 제3조・제4조・제7조・제9조)

- ~규정에 의한(다) → 에 따른(다)
- 각호 → 각 호

- 기타 → 그 밖에(의)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서 종 진)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불법주·정차단속에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출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 해 오던 것에 대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 조문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주요조문별 개정내용검토

○ **불법주정차단속 관련 과태료의 세입 및 세출(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이 조례의 설치 근거인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재원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태료를

재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15조(전용차로 설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 하여는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조례안 제3조(세입)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수입을 세입의 근거로 정하고, 안 제4조제4항(세출)에서 군수가 부과 징수한 과태료 중 이 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작년도 기준 과태료수입액과 이에 따른 지출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현황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 특별회계 조례의 설치목적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두고 있는 만큼 세출에 있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개정사항은 그간 이 조례에 준용한 법조항 및 조문의 일부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맞게 개정하고,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법령만들기”사업내용에 맞게 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08 - 19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경제과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6월 1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년 6월 19일

마. 의안번호 : 제2008 - 19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과장 이 동 순)

가. 개정이유

○ 개정된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군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단서)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 및 내용을 변경함
(안 제3조·제15조)

- 배기량 800cc이하 자동차(경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경형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긴급자동차 정의)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토지의 감정평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안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 제19조 • 제20조)

-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기타 → 그 밖에(의)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서 종 진)

○ 군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안 제3조)

- 2008. 3. 3. 군청 부설주차장이 유료화 됨에 따라 주차장관리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거창군 부설주차장 관리규정」(2008. 3. 1 제정)으로 정하고, 이 조례에 군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밖에 개정사항은 그간 이 조례에 준용한 법조항 및 조문의 일부내용이 맞지 않아 이를 맞게 개정하고,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내용에 맞게 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08 - 21호》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6월 1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년 6월 19일

마. 의안번호 : 제2008 - 21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 생 이)

가. 제정이유

○ 이농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가 및 사용일수가 적은 각종 농업기계를 구입함에 따른 농가부채 상승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 우리 군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농업기계임대은행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임대은행의 설치 및 기능, 운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 임대기준 및 임대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 임대농기계의 반환 및 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 임대사업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 비치대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서 종 진)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소규모 농가에서 농업기계를 개별로 소유하기가 어렵고 연간 사용기간이 짧아 유지관리비의 과다발생 및 새로 영농을 시작하려는 경우 농기계구입비가 많이 들고 경영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조례안의 구성체계

○ 이 조례안은 총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임대은행의 기능(안 제4조), 임대은행의 설치 운영(안 제5조 내지 안제6조), 농기계 사용허가 관련(안 제7조 및 안 제8조), 임대료(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안 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주요조문별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에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가 된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임대은행의 설치)에서 임대은행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보관창고가 준비되어 있는지와 이 조례 내용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3조(정의), 제4조(임대은행의 기능), 제5조(설치 및 운영)는 이 조례 제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안 제6조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요원과 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인원을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인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에서 농기계사용허가 기준을 사용기간은 3일 내로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소지도 있어보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잘 이행하여 농기계임대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임차시 임차인에게 특별한 주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2조(농기계의 반납),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은 이 조례 제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안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제3항에서 “농기계의 출고이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임대은행에서 농기계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농기계를

임차한 농민이 농기계사용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만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법상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